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4

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: 남인순·홍성국·장혜영

이탄희 · 양이원영 · 박홍근

진선미 · 최혜영 · 조오섭

아수진비 · 윤미향 · 김영배

주철현 · 황운하 · 고영인

김승원 • 권칠승 • 김상희

홍영표 • 박영순 • 권인숙

박상혁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수 있는 반면,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음.

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한정되어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, 과학기술 발달로 부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제57조제2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으나,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,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.

이에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 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 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.

한편 현행법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,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 는 것임(안 제46조, 안 제57조제2항 및 안 제12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"혼인 중 출생자의"를 "출생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"를 "제1항에 따라 부 또는 모가"로한다.

제57조제2항 중 "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"을 "성명,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"로 한다.

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22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  - 2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 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<u>혼인</u> 중	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출생자의-
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	
는 모가 하여야 한다.	
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	<u>&lt;</u> 삭 제>
모가 하여야 한다.	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	③ 제1항에 따라 부 또는 모가
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	
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	
고를 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	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
한 인지) ① (생 략)	한 인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모의 <u>성명·등록기준지 및</u>	②성명, 등록기준지 또는
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	주민등록번호를
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	
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	
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	
고를 할 수 있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2조(과태료) 이 법에 따른 신	제122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
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	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

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 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<u>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</u> <u>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</u> 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과한다.
  - 1.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  - 2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
    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
   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
    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